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8
----------	-----

2021. 9. 7.(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2021년 9월 3일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국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안 제6조)
- 위탁 (안 제7조)
- 지원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접촉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와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 전

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지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이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교육·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8조에 따라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